

사진기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진의 저작권은 그 기자가 당해 언론사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법적 지위를 갖고 근무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신문사에 귀속된다.

Jean-Michel Rillon c Sté Edicop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anterre, Ire chambre, section A

(낭테르지방법원 제 1 부), 1996 년 6 월 19 일 판결

## 판시요지

1995 년 3 월 22 일자 소장에 의하면, Jean-Michel Rillon 은 기자-탐문기자-사진기자(journaliste-reporter-photographe)의 신분으로 1990 년 1 월부터 1994 년 11 월말까지 Edicop 회사에 고용되어, 신문에 보도된 분량에 따라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Edicop 회사는 '보험신문' (Journal de l'assurance)에 Jean-Michel Rillon 기자의 동의나 추가적인 보수의 지급 없이 기자 자신이 이미 제공한 많은 양의 사진을 전재(재게재)하였다. 아무런 특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전재권(판권)은 첫 번째 신문의 발행으로부터 종료되며, 이들 사진에 대한 전재는 불법적이며 기자 자신의 물질적·정신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Jean-Michel Rillon 기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Jean-Michel Rillon 기자는 Edicop 회사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법 제 132 조 제 6 항, 제 131 조 제 3 항, 제 121 조 제 2 항, 제 121 조 제 8 항 및 노동법 제 761 조 제 9 항에 의거하여 10 만 프랑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16 만 프랑의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서 Jean-Michel Rillon 기자는 사진의 원판을 양도하거나 재생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신 민사소송법 제 700 조의 규정에 따라 12,060 프랑(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Edicop 회사의 항변에 의하면, 노동법 제 761 조 제 9 항은 문제된 경우처럼 동일신문에 저작물의 전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Edicop 회사가 판단하기로는, 급여의 일시불적인 성격이 이 경우 사진의 양도가 첫 번째 발행에 한정되므로 그 발행 즉시 그에 관한 전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Edicop 회사의 입장에서는 쌍방간에 공통적인 의사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적어도 Jean-Michel Rillon 기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진의 양도는 곧 전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차적으로 Edicop 회사는 문제의 손해의 범위나 실제에 비추어 보건대, 배상액은 16,050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Edicop 회사는 신 민사소송법 제 700 조의 규정에 따라 2 만 프랑을 청구하였다.

## 판시사항

Rillon 씨는 기자-탐문기자-사진기자의 신분으로 Edicop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는 그 급여에 따른 대가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회사에 공여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Rillon 씨의 많은 사진 원판이 Edicop 회사에서 수 차례에 걸쳐 「보험신문」(Journal de l'assurance)에 게재된 점은 인정된다.

Rillon 씨가 양도한 사용권은 첫 번호의 발행과 더불어 소멸한다는 주장을 살펴 보면, 지적재산권법 제 131 조 제 3 항에 반하는 양도의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 132 조 제 6 항에서는 급여의 일시불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21 조 제 8 항에서 이용권은 여전히 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법 제 121 조 제 8 항은 단지 기사작성자나 연설자의 권리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진작가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적재산권법 제 131 조 제 3 항 및 제 132 조 제 6 항 어디에서도 발행인은 급여를 받는 사진작가의 사진의 이용권이 첫 번째 발행에 한정되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종료될 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를 받는 사진작가의 지위는 노동법 제 751 조 제 9 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761 조 제 2 항의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는 기자의 기사나 문학적·예술적인 작품이 하나 이상의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journal ou périodique)에 게재되는 권리는 전재를 허용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에 따라야만 한다."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입법자는 (언론)출판물의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언론)출판물의 특정 호수나 그 이후 동일제호로 발행되는 호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저작물의 간행(publication)은 처음으로 간행된 출판물과 다른 (언론) 출판물일 경우만 상정될 수 있을 뿐이며, 노동법 제 751 조 제 9 항도 이와 같은 상이한 경우에만 사전적인 계약관계를 요구할 뿐이다. 반면에 동일한 출판물에서의 간행은 발행인에게 무제한적인 이용권이 주어진다.

노동법 제 761 조 제 9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존재는 그 계약에 따라서 기자의 저작물을 전재하거나 사용하는 권리가 발행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양도는 첫 번째 발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의 종료와 더불어 끝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지적재산권법 제 111 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작품의 저작자에 의한 서비스나 저작물의 임차계약의 존재가 저작권의 향유를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는 한편으로 이 경우처럼 노동법 제 761 조 제 9 항의 적용을 받는 급여를 받는 기자의 경우에는 특별규정에 따라 이 원리가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한편으로 저작자에게는 여전히 정신적 권리의 존재와 향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Rillon 씨의 급여는 곧 그의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한을 그의 고용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서 사진의 전재는 동일신문에 행하여졌으므로 그것은 적법하다.

Rillon 씨의 제소는 잘못된 것이며 기각되어야 한다.

신 민사소송법 제 700 조의 시행조건은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본다.

Rillon 씨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

## 판결해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지방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anterre 의 판결이다. 프랑스의 민·형사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cour d'appel)에 항소할 수 있다. 대법원격인 파기원은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에서의 쟁점은 사진기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사진을 당해 신문에 게재한 다음에 그 이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원고는 일단 한 번 게재된 이후에는 당해 사진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나, 법원은 적어도 당해 언론사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법적 지위를 갖고 근무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특별계약이 없는 이상 당해 사진의 저작권은 신문사에 귀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기자가 자신이 제공한 기사를 비롯한 사진 등의 저작권은 적어도 그가 당해 언론사에 근무하는 한 그 저작권은 당해 신문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를 통하여 언론사와 기자와의 관계에 관한 법적인 문제의 하나로서의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정리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35 호, 1996년 10월(제 8호) 127-128면)